

— 200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년 7월 10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1년 7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01년 7월 14일, 7월 20일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

나. 제안이유

○ 원평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대상부지가 협소하여 확장코자 인접 사유지 매입.

○ 보존 부적합 사유재산을 인접 토지 소유자의 신청자에게 매각.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 3필 1,192㎡ (추정가 : 1,311,200천원)

- 원평동 55-3 전 536㎡

- " 56-7 답 646㎡

- " 56-17 잡 10㎡

○ 처분재산 : 3필 94㎡ (추정가 : 12,730천원)

- 고아 황산리 493 대지 56㎡(추정가 : 672천원)

- 진 평 동 429-1 대지 19㎡(추정가 : 4,940천원)

- 송 정 동 446-5 대지 225.8㎡ 중 42/493(약19㎡)
(추정가: 7,118천원)

라.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3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경 도

- 취득재산은 원평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주차공간부족을 해소하고 자치센터 건립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매각 재산은 주민들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투리 시유지를 매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